



2024년 3월 1일 시행

군산 공립중등교원 및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차 례

제1장 총칙	3
제2장 정원관리	3
제3장 신규교원 학교 배치	4
제4장 보직교사 임용	4
제5장 교사(수석교사)전보	5
제6장 교감전보	7
부 칙	8

군산 공립중등교원 및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및 전북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과 영양교사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 지역 교원 인사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6.>

제 2 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군산관내 공립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교감, 교사)과 군산관내 영양교사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8.6.>

제 3 조(인사관리)

이 기준은 전북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과 영양교사인사관리기준에 준하여 시행 한다.<개정 2020.8.6.>

제 2 장 정 원 관 리

제 4 조(교사 정원관리)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배정한 학교별 교사 정원을 배정한다. <개정 2013.12.16.>
- 각 학교의 교과별 정원은 해당 학교에 배정된 교사 정원 내에서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산출한다.

3.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둘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교사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해당 학교장의 요청과 교사 소속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과별 순회근무 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4. 각 학교의 배정된 교사 정원에서 신규교사 및 정원내기간제 교원이 특정 지역 및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제 3 장 신규 교원 학교 배치

제 5 조(신규교원의 학교 배치)

1. 신규교원은 생활근거지 등을 참작하여 학교 교원의 교육경력과 지역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음악, 미술, 체육지정 종목 육성학교에는 본인의 특기를 참작하여 배치 할 수 있다.<개정 2023.7.18.>
2. 본인이 특별히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도서지역의 중학교에 임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7.18.>
3. 영양 및 보건 신규교원의 경우,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제 6 조(기간제교사의 임용)

1.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하여 교원이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하거나,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2.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제8조 제9항에 따라 학교장이 임용하며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은 정규교사 발령 시 즉시 퇴직 한다.

제 4 장 보직교사 임용

제 7 조(정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개정 2013.12.16.>

제 8 조 (임용기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개정 2013.12.16.>

제 9 조(임용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개정 2013.12.16.>

제 5 장 교 사(수석교사 포함) 전 보<개정 2017.8.16.>

제 10 조(인사지역)

“도서외”, “도서”로 분리하여 인사 한다.

제 11 조(전보시기)

정기 전보는 때 학년말에 실시하고 학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충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 12 조(전보원칙)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본 시로 발령된 교사와 관내 전보 희망교사 중에서 임지 배정하는 데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설중학교 개교 준비위원 교사는 우선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영양 교사의 임지배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열부에 따른다.<개정 2020.8.6.>

2. 전보순위

- 가. 관내 감축 교사
- 나. 삭제 <개정 2013.12.16.>
- 다. 관내 일반 전보 교사
- 라. 타 시 · 군 전입 교사
- 마. 복직 교사
- 바. 타 시 · 도 전입 교사
- 사. 신규 임용 교사

제 13 조(전보희망인원)

1. 학교장은 소속 학교 교사 정원의 40%이내(순환 전보, 일반 전보 내신자 포함)에서 전보 내신을 한다. 단, 도서지역중학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 교육지원청 관할센터 소속교사는 센터별 40%이내에서 전보내신 할 수 있다.
<신설 2014.04.30.><개정 2023.7.18.>

제 14 조(음악, 미술, 체육 특기교사의 전보)

음악 특기(성악, 현악, 국악)와 미술특기, 체육 지정 종목 육성학교는 학교장의 내신과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해당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 15 조(관내 전보)

1. 삭제 <개정 2013.12.16.>
2. 관내 일반 전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상

동일교 2년 이상 근속하고 2년이상 군산지역 근속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30.><개정 2015.02.12.>

나. 방법

- 1) 전보 학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3개 학교 내에서 희망한다.
- 2) 전보는 교과별(중학교 사회과와 과학과, 기술가정과는 통합교과로 작성)전보 서열부를 작성하고 서열에 의하여 전보한다. 다만, 전보 서열부에 등재가 없을 때에는 추가 내신에 의거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7.8.16.>
3. 전보 서열부는 다음에 의하여 작성한다.
 - 가. 전보 희망을 받은 교사의 교과별 전보 서열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 교원 인사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일반 전보 가산점을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23.7.18.>
 - 1) 군산 관내 현임교(군산교육지원청)근무 최근 4년 이내의 근속경력(해당 기간의 가산점 부여)<개정 2023.7.18.>
 - 2) 삭제<개정 2017.8.16.>
 - 3) 삭제<개정 2023.7.18.>
 - 4) 삭제<개정 2023.7.18.>

- 나. 평정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전보한다.
- 1) 동일교 근무 연한이 많은 자
 - 2) 근속 호봉이 높은 자
 - 3) 삭제<개정 2017.8.16.>
 - 4) 생년월일이 빠른 자
4. 교과별 전보서열 평정 자료의 평정점은 당해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준한다.
5. 영양교사의 관내전보는 유·초·중·고 학교급을 통합하여 학교급이 다를때도 인정한다.<신설 2020.8.6.><개정 2021.8.9.>

제 16 조(도서지역 중학교 전보)

도서지역 중학교 희망자 중 다음 순위로 한다. 단, 도서 지역 학교에 근속경력이 있는 교사는 도서 지역 학교에 전보하지 않으나, 도서벽지제한 신규교사로 임용되어 8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2년이상 군산지역 근속가능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개정 2017.8.16.>

1. 경합 시 전보 순위
 - 가. 삭제 <개정 2013.12.16.>
 - 나. 관내 일반 전보 교사
(관내 감축 교사는 관내 일반 전보 교사에 준한다.)
2. 희망자가 없는 경우
 - 가. 신규임용교사, 타 시·도 전입 교사, 타 시·군 전입교사, 복직교사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30.>
 - 나. 같은 조건일 때는 생년월일이 늦은자를 우선 배정한다. <신설 2014.04.30.>
3. 전보 방법은 제15조 2항, 3항에 따른다.<개정 2013.12.16.>

제 17조 (긴급전보대상교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개정 2013.12.16.>

제 6 장 교감전보

제 18 조(전보원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개정 2013.12.16.>

제 19 조(배정학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임지 배정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6.> <개정 2023.2.10.>

1. 정원감축 등 과원 조정 대상 교감

2. 관내 전보 교감 : 본인 희망 고려

* 관내 전보 기준: 군산'가' 및 군산'나' 구분 없이 군산시 내에서의 전보는 모두 관내 전보로 간주

3. 전직 교감 : 본인의 희망 및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치

4. 타 시·군 전입 교감 : 전입자의 희망 순위에 따라 배치

5. 신규 교감 : 승진후보자 서열부 순위에 따르되,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

6. 경합으로 1~5항에 따라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1순위: 교감 경력이 많은 자

나. 2순위: 교육경력(호봉)이 높은 자

다. 3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자

7. 학교의 특수성이나 부부교원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항의 순위에 따라 배치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를 배치할 수 있다.

제 20 조(방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개정 2013.12.16.>

제 21 조(전보 유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인사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개정 2013.12.16.>

부 칙

(2008.12.12.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

○ 제10조 신설, 제15조 제2항 개정, [별표 3] 삭제

○ 이 기준안은 2009.3.1부터 시행한다(단, 제10조는 2012.3.1, 제15조제2항나의1은 2010.3.1부터 시행, [별표3] 2010.3.1부터 시행)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2009학년도 학년말 인사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1.17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결정에 의거 개정 및 신설)

- 제15조 제3항 “가”의 가산점 추가 신설향목 그리고 별표2, 별표3(2010.03.01부터 시행), 별표4-1, 별표4-2, 별표4-3,(기존 별표 4-3은 삭제), 별표 4-4의 50% 축소 적용과 별표 4-7, 별표 4-8, 별표 4-9의 신설 가산점 적용은 2011학년도 학년말 인사시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2011학년도 학년말 인사시부터 시행한다.
(2010학년도 말 인사는 기존 인사관리기준에 의해 시행한다.)

부 칙(2011.12. .)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이 기준안에 명시되지 않은 인사에 관한 사안이 발생한 때는 전라북 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및 군산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2.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5조(관내전보) 가. 대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8.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 제15조 제3항 “가”의 4)기타 가산점 개정

부 칙(2020.08.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0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7.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18.)

(2024.1.18.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3월 1일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